#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연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06

발의연월일: 2024. 6. 14.

발 의 자:이연희·한민수·허종식

이정문 · 정성호 · 문진석

김남희 • 서영석 • 허 영

최기상 · 최민희 · 김정호

이병진 · 서미화 · 김유덕

문금주 • 민형배 • 박수현

박 정 • 민홍철 의원

(2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 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2021년 2월 8일에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의 노동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, 근무 중 고객으로부터 욕설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93%에 달하는 등 콜센터 상담사를 비롯한 고객응대근로자는 항시적으로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격이 파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전 국가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도록 함으로써 보다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(안 제41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1조의2(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제7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영하며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41조의2(고객응대근로자의 건
	강장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)
	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1조제
	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
	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3
	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
	그 결과를 「국가인권위원회
	법」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
	위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
	에게 알리고 제7조에 따른 산
	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에
	반영하며 관련 정책수립의 기
	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
	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
	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
	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
	<u> 정한다.</u>